

2025년 제11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라·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 월 13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칙 제869호

붙임 여수시 라·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69호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동문동 및 쌍봉동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제3조 관련)

동명	통명	반명	관할 구역
동문동	18통 (신설)	1	관문동(더 로제 아델리움 101동) 상가 1층~2층, 301호~303호, 401호~404호, 501호~504호, 601호~604호, 701호~704호, 801호~804호, 901호~904호
		2	관문동(더 로제 아델리움 101동) 1001호~1004호, 1101호~1104호, 1201호~1204호, 1301호~1304호, 1401호~1404호, 1501호~1504호, 1601호~1604호
		3	관문동(더 로제 아델리움 101동) 1701호~1704호, 1801호~1804호, 1901호~1904호, 2001호~2004호, 2101호~2104호, 2201호~2204호, 2301호~2304호
		4	관문동(더 로제 아델리움 101동) 2401호~2404호, 2501호~2504호, 2601호~2604호, 2701호~2704호, 2801호~2804호, 2901호~2904호
		5	관문동(더 로제 아델리움 102동) 상가 1층~2층, 302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601호~603호, 701호~703호, 801호~803호, 901호~903호, 1001호~1003호, 1101호~1103호
		6	관문동(더 로제 아델리움 102동) 1201호~1203호, 1301호~1303호, 1401호~1403호, 1501호~1503호, 1601호~1603호, 1701호~1703호, 1801호~1803호, 1901호~1903호, 2001호~2003호
		7	관문동(더 로제 아델리움 102동) 2101호~2103호, 2201호~2203호, 2301호~2303호, 2401호~2403호, 2501호~2503호, 2601호~2603호, 2701호~2703호, 2801호~2803호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쌍봉동	9통	1	학동 69 ~ 72 일원
		2	학동 73 ~ 76 일원
		3	학동 77 ~ 78 일원
		4	학동 79 ~ 84 일원
		5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상가 1층~3층, 402호~3502호
		6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403호~3403호
		7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504호~3503호
		8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401호~3501호
		9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상가 1층~3층, 402호~3502호
		10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403호~3403호
		11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504호~3503호
		12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401호~3501호
	∴	∴	∴
	71통 (신설)	1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1동) 101호~1501호, 102호~1302호, 103호~803호, 104호~604호
		2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2동) 101호~1301호, 102호~1502호
		3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2동) 103호~1503호, 104호~1504호
		4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3동) 101호~1701호, 102호~1702호
		5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3동) 103호~1903호, 104호~1904호

2025년 제11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1 월 13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규칙 제870호

붙임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해임된 경우 및 리·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을 “해임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장·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한다.
2. 서류심사는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3. 면접심사는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면장·동장이 정할 수 있다.
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이·통장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및 결과

심사대상자 : _____ 주소 : _____

평 가 항 목	점수	기 준	배 점	득 점	비 고	
계	50					
1.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주민등록 기준 (과거 거주이력 포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12			
		2년 이상 ~ 5년 미만	9			
		2년 미만	6			
2. 자원봉사 실적	10	40시간 이상	10		<u>공고일 기준</u> 3년 이내 자원봉사 인증기관 확인서 필요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			
		2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6			
		2시간 미만	4			
3. 직업 상태	10	무 직	10		직장소재지 해당 읍·면·동 내/외 기준	
		자 영 업	8			
		직업있음	근무지 관내	6		
			근무지 관외	4		
4. 참여기회 균등	10	신규	10		해당 읍·면·동 이·통장 역임 횟수	
		1회	8			
		2회	6			
		3회 이상	4			
5. 행정기관 상훈	5	2회 이상	5		<u>공고일 기준</u> 5년 이내 표창 실적	
		1회	3			
		없음	2			

심사위원 : _____ (서명)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

이·통장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및 결과

심사대상자 : _____ 주소 : _____

평가항목	점수	기준	특점	질문사항 (예시)
서류심사점수	50			
책임감 및 주민 화합 능력	15	상(10~15) 중(5~9) 하(0~4)		주민 불편·분쟁 대응 및 화합 방안 예시: “주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역할 인식 및 지원 동기	15	상(10~15) 중(5~9) 하(0~4)		조례상 임무와 역할 숙지, 지원 이유 예시: “이·통장의 주요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정 이해도	10	상(7~10) 중(3~6) 하(0~2)		여수시(읍면동) 주요 시책, 행사, 현안 인식 예시: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시기와 주 행사장소를 말해보세요.”
시정 참여도	5	상(4~5) 중(2~3) 하(0~1)		시민으로서 시정 참여 여부, 향후 기여 의지 예시: “시에서 추진한 행사, 공청회, 축제 등에 참여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의사 표현력 및 면접 태도	5	상(4~5) 중(2~3) 하(0~1)		발표력, 논리성, 태도 예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보세요.”
계	100			

심사위원 : _____ (서명)

사람을 우선 임명할 수 있다.

⑦ (생략)

3. 면접심사는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면장·동장이 정할 수 있다.

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

⑦ (현행과 같음)